

농림부 고시 제2000 - 81호

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3항, 제55조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 “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0. 12. 23.

농 립 부 장 관

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국내로 수입되는 생우를 사육·도축·가공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자 및 사육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생우(살아 있는 소)”라 함은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상 0102호에 해당되는 상품을 말한다.
- “국내사육기간”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생우의 통관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“도축검사신청서” 또는 제7조2항의 “학술연구용등신고서”를 제출한날까지 계산한다.
- “검사원”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원산지 표시 및 방법)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소의 엉덩

이에 낙인을 표시하여야 하며, 낙인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낙인의 크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(최소직경 10cm이상)로 표시하여야 하며, 검역에서 도축·폐사시까지 소멸, 인멸,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되어야 한다
- 표시언어는 ISO(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)에서 정한 국가별코드(예 : USA, AU, CAN, NZ 등)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검역관리 등)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(이하 “검역원장”이라 한다.)은 수입생우의 검역 시 제3조에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낙인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낙인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·도지사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(이하 “농관원장”이라 한다.),

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제5조(수입생우의 국내관리) 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출국, 고유 번호 및 통관일을 기재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② 검역원장은 제1항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장소별로 부여하고 귀표의 크기와 재질, 기재사항의 기재방법 등을 정한다.

③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한 낙인 및 귀표를 소멸·인멸·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수입생우의 사육) ① 수입업자는 수입 생우를 농가 등에 판매하거나, 또는 위탁사육하는 경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

② 수입생우를 수입한 자, 매매한 자, 사육하는 자는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통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는 수입생우가 폐사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이를 검역원장 및 농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도축 등) ① 수입생우를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“도축검사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”의 비고란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,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,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입생우를 학술용으로 도축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“학술

연구용등도살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,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원은 귀표번호와 통관일을 확인하여 도축검사증명서에 국내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국내산으로, 그 미만일 경우는 생우 수출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.

④ 검사원은 수입생우 도축검사시 제5조 제1항에 의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, 제4조 제2항의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사육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생우 수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월별도축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 및 농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의 검역증명서 발행실적과 제1항의 도축실적을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에 활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유예기간)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생우는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설명자료

1. 제정이유

-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고, 생우 수입도 가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를 국산(육우)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 규정(제6-3-1조)도 개정함에 따라
-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, 가축질병·위생 등 관리를 위해 수입생우에 대한 사육·도축에 따르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고시 법적근거 :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3항, 제55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

3. 주요 내용

- 수입 생우의 원산지 표시(제3조)
 -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표시
 - 낙인의 크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(최소 직경 10cm이상)로 도축·폐사시까지 소멸, 인멸,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
 - 표시언어는 ISO에서 정한 국가별코드로 표시
- 수입생우의 검역과정상 관리(제4조, 제5조)
 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
 - 낙인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입생우는 수

입업자가 표시

-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 10일 이내 관계기관(농관원, 시·도, 등급판정소)에 통보
-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귀표를 부착
 - 귀표에는 수출국, 고유번호 및 통관일을 기재.
- 검역원장은 귀표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장소별로 부여
-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낙인 및 귀표를 소멸·인멸·훼손·변경 금지.
- 수입생우의 국내거래 및 사육(제6조)
 - 수입생우의 수입·판매·사육시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첨부 및 보관(2년)
 - 수입생우 사육중 폐사하는 경우 시·도지사 신고(사육자)
- 수입생우의 도축시 국내사육기간 확인(제7조)
 - 도축업의 영업자는 "도축검사신청서등"의 비고란에 수출국, 귀표번호,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,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
 - 도축전에 검사원은 고유번호와 통관일을 확인하여 도축검사 증명서에 원산지를 표시
 - 6개월 이상 사육시는 국내산 육우고기로 표시(쇠고기종류별 등급별구분방법 개정하여 관보고시 의뢰중)

- 6개월 미만 사육시는 수입산 육우고기로서
수입국표시
-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 강화
(제8조)
 - 시·도는 월별도축실적을 국립수의과학검역
- 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
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·도는 검역발행 내용과 도축실적을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에 활용
-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

수입생우 사후관리 절차도

